

의안번호	제15호
의결 연월일	2010년 8월 일 (제293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0년 7월2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
----------	----

제출연월일 : 2010년 7월 23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민선5기 출범에 따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등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① 국단위 조정 <각 안 참조>

《1실 7국 1단 1본부 → 1실 6국 1단 1본부》 △1국

- 통합 (△1국) : 균형발전국 + 건설방재국 → 균형개발방재국
- 명 칭 변 경 : 경제통상국 → 경제진흥국
- 기능조정 및 명칭변경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국 ▶문화관광환경국 → 여성문화환경국
- 실·국·단·본부 건제순 조정
정책관리실→행정국→보건복지국→경제진흥국→균형개발방재국→여성문화환경국→농정국→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소방본부
↳ 한시기구

②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조정 <각 안 참조>

- 신설 :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설치 (균형발전 및 주민편의 도모)
 - 시행시기 : 조례공포 후 6월내 출장소 조직 설치 후 시행
 - 관할구역 : 제천시, 단양군
 - 담당사무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에서 따로 정함.
- 명칭변경 : 농산사업소 → 종자사업소로 변경
- 기관 위치변경 : 보건환경연구원 (청주시 → 청원군)

③ 실·국 및 하부기관 분장사무 조정 <각 안 참조>

- 국제기획·국제교류 업무 이관 (경제통상국 → 정책관리실)
 -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통상진흥 등 수출지원 업무는 존치
- 갈등관리 업무, 행정국에서 삭제 ※ 감사관으로 이관
- 민방위 관련업무 이관 (행정국 → 균형개발방재국)
 - 민방위, 경보통제, 국가기반 보호,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 균형발전 업무 이관 (균형발전국 → 정책관리실)
 - 지역균형개발·발전에 관한 사항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 균형발전국 + 건설방재국 사무 → 균형개발방재국으로 통합
- 청소년,여성,가족,결혼중개업에 관한 사항(보건복지여성국→여성문화환경국)
 - 청소년·여성복지 정책 및 여성권익 증진, 건강가정 육성에 관한 사항
 - 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생활체육 등 체육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환경국 → 행정국)
 -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등
- 농산사업소 종자보급과 업무 삭제 (북부출장소로 이관)
 - 농산물 보급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북부출장소 설치 후 시행)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사업소장”을 “사업소장·출장소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실·국·단·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관리실, 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진흥국, 균형개발방재국, 여성문화환경국, 농정국,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책관리실) 정책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도정 주요정책과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균형개발·발전에 관한 사항
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및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6. 주요 행정시책의 확인 및 평가
7. 의회 및 교육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8. 행정의 창의실용, 지방분권,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
9. 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 예산 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
11.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
12.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13. 각종 통계조사·분석 및 자료관리
14.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제1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4.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및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 11.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
- 12.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경제통상국)”을 “(경제진흥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제10호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조를 제9조라 한다.

- 10. 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항
- 11.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균형개발방재국) 균형개발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토이용계획·관리 및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3. 도심공동화 해소에 관한 사항
- 4.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광역도시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 6. 공공기관 이전·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 7. 기업도시 건설·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 8.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 9.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0.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 11. 지방도, 시군도, 교량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12.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13. 여객·화물 사업 및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
- 14.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지역연계 교통체계 효율화
- 15. 물류시설단지 관리

16. 하천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7.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의 관리·지도
18. 민방위, 경보통제, 국가기반보호,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9. 재난관리, 재해예방대책, 재해조사 및 복구 계획의 수립
20. 토지정보의 조사·등록관리 및 지적업무 및 토지 관리의 종합기획·조정
21.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개선
22. 건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육성
23. 공공디자인,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제12조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조를 제8조라 한다.

제8조(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기초생활,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 및 재활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화장장·묘지·매장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5. 고령화, 저출산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보건, 신종전염병, 지방의료원에 관한 사항
7.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건, 의무, 방역,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9. 위생 및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조를 제11조라 한다.

제11조(여성문화환경국) 여성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술·종교단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5. 여성복지 정책 및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6. 건강가정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9. 관광사업체 지도 육성 및 관광객 유치 홍보
10. 관광,레포츠산업 육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2. 자연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기후변화대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13.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14. 대기·수질·토양·소음·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5. 물관리 종합계획 조정 및 수질관리
16. 상·하수도 종합계획 조정
17. 지하수 관리 및 댐주변 관리에 관한 사항
18. 폐수 배출업소 및 축산폐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를 제13조라 한다.

제26조제2항 중 “청주시”를 “청원군”으로 한다.

제43조 다음에 제4절의 제목 “충청북도농산사업소”를 “충청북도종자사업소”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충청북도농산사업소(이하“농산사업소“라 한다)” 를 “충청북도종자사업소(이하“종자사업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농산사업소”를 “종자사업소”라 한다.

제45조 본문 중 “농산사업소”를 “종자사업소”라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산사업소장”을 “종자사업소장”이라 하고 같은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6조 다음에 제5장(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출장소

제57조(설치) ①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북부지역에 충청북도 북부출장소(이하“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출장소의 소재지는 관할구역 내에 둔다.

③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제천시와 단양군으로 한다.

제58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9조(소관사무) 소장은 도지사가 위임하는 관할구역내의 도의 사무(도지사의 사무를 포함한다)를 관장한다. 다만, 특정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2호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출장소의 조직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통·폐합·분리 및 변경된 부서의 명칭은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보건복지국장, 여성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 ②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단서 및 제37조제1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각각
“여성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 ③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여성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 ④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 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
장”으로 하고, “균형발전국장”을 “균형개발방재국장”으로 한다.

- ⑥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여성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 ⑦ 「충청북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 ⑧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 ⑨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보건복지여성국장”을“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여성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⑬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경제통상국장·보건복지여성국장·농정국장·건설방재국장”을“경제진흥국장·농정국장·여성문화환경국장·균형개발방재국장”으로 한다.

⑭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⑮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경제통상국장,균형발전국장,문화관광환경국장”을“경제진흥국장,여성문화환경국장,균형개발방재국장”으로 한다.

⑯.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통상국장, 균형발전국장, 복지여성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보건복지국장, 경제진흥국장, 여성문화환경국장, 균형개발방재국장”으로 한다.

⑰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균형발전국장, 건설방재국장”을 “균형개발방재국장”으로 한다.

⑱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균형개발방재국장”으로 한다.

⑲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균형개발방재국장”으로 한다.

⑳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균형개발방재국장”으로 한다.

㉑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균형발전국장,농정국장,문화관광환경국장”을 “농정국장, 여성문화환경국장, 균형개발방재국장”으로 한다.

㉒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경제통상국장”을“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문화관광환경국장”을 “여성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㉓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여성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㉔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

㉕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과 중 “경제통상국”을 “경제진흥국”으로 하고, 제6조제3항제1호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

②⑥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

②⑦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

②⑧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과 제19조제1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각각“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

②⑨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

③⑩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과 제15조 본문 중“문화관광환경국장”을 각각“여성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③⑪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여성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③⑫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여성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③⑬ 「충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과 제11조제3항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각각“여성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③⑭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제3항 중“문화관광환경국장”을 “여성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③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방재국장”을 “균형개발방재국장”으로 한다.

③⑥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균형개발방재국장”으로 한다.

③⑦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와 제8조제3항 중 “건설방재국장”을“균형개발방재국장”으로 한다.

③⑧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경제통상국장·보건복지여성국장·농정국장·건설방재국장”을 “경제진흥국장·보건복지국장·농정국장·균형개발방재국장”으로 한다.

③⑨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및 제2조제4항과 제5조 본문 중 “농산사업소장”을 “종자사업소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 (실장·국장·단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단장·본부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u>사업소장</u>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 (실장·국장·단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단장·본부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u>사업소장·출장소장</u>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 ① (생략) ② <u>직속기관·사업소</u>의 국(부)과와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 ① (생략) ② <u>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u>의 국(부)과와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실·국·단·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정책관리실, 행정국, 경제통상국,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농정국, 보건복지여성국, 문화관광환경국</u>,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및 소방본부를 둔다.</p>	<p>제5조(실·국·단·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정책관리실, 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진흥국, 균형개발방재국, 여성문화환경국, 농정국</u>,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및 소방본부를 둔다.</p>
<p>제6조(정책관리실) 정책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u>주요 행정시책의 확인 및 평가</u> 5. <u>의회 및 교육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u> 6. <u>행정의 창의실용, 지방분권,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u> 7. <u>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u> 8. <u>도 예산 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u> 9. <u>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u> 10. <u>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u> 11. <u>각종 통계조사·분석 및 자료관리</u> 12. <u>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u> <신설> <신설> <신설></p>	<p>제6조(정책관리실) 정책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u>지역균형개발·발전에 관한 사항</u> 5. <u>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및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u> 6. <u>주요 행정시책의 확인 및 평가</u> 7. <u>의회 및 교육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u> 8. <u>행정의 창의실용, 지방분권,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u> 9. <u>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u> 10. <u>도 예산 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u> 11. <u>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u> 12. <u>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u> 13. <u>각종 통계조사·분석 및 자료관리</u> 14. <u>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u> 15. <u>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u></p>

현행	개정안
<p>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생략)</p> <p>4. <u>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갈등관리 및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u></p> <p>5. ~ 10. (생략)</p> <p>11. <u>민방위, 경보통제, 국가기반보호,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및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u></p> <p>5. ~ 10.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11. <u>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u></p> <p>12. <u>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제8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9. (생략)</p> <p>10. <u>국제교류·협력, 통상진흥에 관한 사항</u></p> <p>11. <u>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등에 관한 사항</u></p> <p>12. ~ 17. (생략)</p>	<p>제9조(경제진흥국) 경제진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항</u></p> <p>11. <u>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u></p> <p>12.~17 (현행과 같음)</p>
<p>제9조(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6. (생략)</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제10조(건설방재국) 건설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p> <p>2.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p> <p>3. 지방도, 시군도, 교량의 건설 및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p> <p>4.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p> <p>5. 재난관리, 재해예방대책, 재해조사 및 복구 계획의 수립</p> <p>6. 하천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p> <p>7.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의 관리·지도</p> <p>8. 토지정보의 조사·등록관리 및 지적업무 및 토지 관리의 종합기획·조정</p> <p>9. 공공기관 이전·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p> <p>10. 기업도시 건설·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p> <p>11. 밀레니엄타운,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12조(균형개발방재국) 균형개발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국토이용계획·관리 및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p> <p>2.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p> <p>3. 도심공동화 해소에 관한 사항</p> <p>4.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5. 차이나월드 조성사업</p> <p>6. 공공기관 이전·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p> <p>7. 기업도시 건설·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p> <p>8.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p> <p>9.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p> <p>10.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p> <p>11. 지방도, 시군도, 교량의 건설 및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p> <p>12.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p> <p>13. 여객·화물 사업 및 자동차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p> <p>14.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지역연계 교통체계 효율화</p> <p>15. 물류시설단지 관리</p> <p>16. 하천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p> <p>17.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의 관리·지도</p> <p>18. 민방위, 경보통제, 국가기반보호,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p> <p>19. 재난관리, 재해예방대책, 재해조사 및 복구 계획의 수립</p> <p>20. 토지정보의 조사·등록관리 및 지적업무 및 토지 관리의 종합기획·조정</p> <p>21.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개선</p> <p>22. 건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육성</p> <p>23. 공공디자인,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p>

현행	개정안
<p>제11조(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14.(생략)</p>	<p>제10조(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14.(현행과 같음)</p>
<p>제12조(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사회복지, 기초생활에 관한 사항</p> <p>2. 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p> <p>3.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4. 여성복지 정책 및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p> <p>5. 건강가정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p> <p>6. 영유아 보육·아동 복지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p> <p>7.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및 재활에 관한 사항</p> <p>8. 화장장·묘지·매장에 관한 사항</p> <p>9. 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10. 공공보건, 신종전염병, 지방의료원에 관한 사항</p> <p>1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p> <p>12. 보건, 의무, 방역,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p> <p>13. 위생 및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p>	<p>제8조(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사회복지, 기초생활,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p> <p>2. 장애인 복지 및 재활에 관한 사항</p> <p>3. 노인복지, 화장장·묘지·매장에 관한 사항</p> <p>4. 아동복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p> <p>5. 고령화, 저출산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6. 공공보건, 신종전염병, 지방의료원에 관한 사항</p> <p>7.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p> <p>8. 보건, 의무, 방역,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p> <p>9. 위생 및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제13조(문화관광환경국)문화관광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생략)</p> <p>4.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p> <p>5. 관광사업체 지도 육성 및 관광객 유치 홍보</p> <p>6. 관광, 레포츠 산업 육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p> <p>7.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p> <p>8.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9.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p> <p>10. 자연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기후변화대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p> <p>11.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p> <p>12. 대기·수질·토양·소음 유독물 등의 환경 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p> <p>13. 물관리 종합계획 조정 및 수질관리</p> <p>14. 상·하수도 종합계획 조정</p> <p>15. 지하수 관리 및 댐주변 관리에 관한 사항</p> <p>16. 폐수 배출업소 및 축산폐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p> <p><신설></p> <p><신설></p>	<p>제11조(여성문화환경국)여성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p> <p>5. 여성복지 정책 및 여성권의 증진에 관한 사항</p> <p>6. 건강가정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p> <p>7. 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8.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p> <p>9. 관광사업체 지도 육성 및 관광객 유치 홍보</p> <p>10. 관광,레포츠산업 육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p> <p>1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p> <p>12. 자연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기후변화대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p> <p>13.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p> <p>14. 대기·수질·토양·소음 유독물 등의 환경 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p> <p>15. 물관리 종합계획 조정 및 수질관리</p> <p>16. 상·하수도 종합계획 조정</p> <p>17. 지하수 관리 및 댐주변 관리에 관한 사항</p> <p>18. 폐수 배출업소 및 축산폐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p>
<p>제13조의2(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4. (생략)</p>	<p>제13조(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첨단의료복합단지 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4. (현행과 같음)</p>
<p>제26조(설치) ① (생략)</p> <p>② 연구원은 충청북도 <u>청주시</u> 관내에 둔다.</p>	<p>제26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연구원은 충청북도 <u>청원군</u> 관내에 둔다.</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절 충청북도농산사업소</u></p> <p>제44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농산물 원종 및 보급종의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u>충청북도농산사업소</u>(이하 "<u>농산사업소</u>")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u>농산사업소</u>는 충청북도 진천군 관내에 둔다.</p> <p>제45조(소장) <u>농산사업소</u>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46조(소관사무) <u>농산사업소장</u>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농산물 보급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u>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절 충청북도종자사업소</u></p> <p>제44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농산물 원종 및 보급종의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u>충청북도종자사업소</u>(이하 "<u>종자사업소</u>")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u>종자사업소</u>는 충청북도 진천군 관내에 둔다.</p> <p>제45조(소장) <u>종자사업소</u>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46조(소관사무) <u>종자사업소장</u>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삭제>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장 출장소</u></p> <p>제56(설치) ①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u>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북부지역에 충청북도 북부출장소</u>(이하 "<u>출장소</u>")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u>출장소의 소재지</u>는 관할구역 내에 둔다.</p> <p>③ <u>출장소의 관할구역</u>은 제천시와 단양군으로 한다.</p> <p>제57(소장) <u>출장소</u>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u>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u></p> <p>제58조(소관사무) <u>소장</u>은 <u>도지사가 위임하는 관할구역내의 도의 사무(도지사의 사무를 포함한다)</u>를 관장한다. 다만, 특정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1]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실·국·본 부
서울특별시		14개 이내
광역시	인구 300만 이상 ~ 500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11개 이내
	인구 200만 미만	10개 이내
도	경기도	18개 이내
	인구 300만 이상 ~ 400만 미만	11개 이내
	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10개 이내
	인구 100만 이상 ~ 200만 미만	9개 이내

비고 : 실·국·본부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본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국·본부 수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